인권센터는

모든 한양인이 인간의 천부적 인권과 존엄성, 평등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 구성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 인권·젠더감수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 인권·성평등 관련 연구를 실시합니다.
-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의 해결을 지원합니다.

전화 (02) 2220-1444
이메일 hyrights@hanyang.ac.kr
홈페이지 http://hrc.hanyang.ac.kr
위치 학생회관 3층 인권센터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함께 만드는 인권존중 성평등 캠퍼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인권존중과 성평등이 실현되는 캠퍼스에서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양성이 환영되며 모두가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한양대인들이 인권존중과 성평등에 근거한 윤리의식을 배우고 실천하여 자유롭고 성숙한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권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목차

인권센터 소개

1부 인권 3
- 1-1 인권의 이해 4
- 1-2 인권침해 6

2부 성평등 9
- 2-1 성평등의 이해 10
- 2-2 성폭력 12

3부 인권침해, 성폭력의 대처 21
- 3-1 인권침해의 대처 22
- 3-2 성폭력의 대처 23

4부 인권센터 29
- 4-1 인권센터가 하는 일 30
- 4-2 사건처리 절차 31
- 4-3 사건처리 및 지원체계 32
- 4-4 인권센터 이용 및 상담신청 안내 32

인권센터 소개

한양대학교 인권센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한양의 배움터에서부터 실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2000년에 '한양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폭력 상담소'를 열었고, 2007년에는 이를 확대 개편한 '양성평등센터'를 개소하여 학내 성평등 윤리의 확산과 실천에 힘써왔습니다. 2018년 이제 그 영역을 '인권센터'로 확장하여 젠더감수성만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갖춘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의 인권센터는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안을 상담하고,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와 처리를 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인간의 고유한 존엄과 평등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합니다. 대학과 우리 사회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 연구 활동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 한양인들이 자신과 타인의 존엄과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날의 삶 속에서 이를 실현해가기를 바랍니다. 인권존중의 정신이 우리 대학에서부터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 인권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존중과 성평등 캠퍼스 문화를 위한 열 가지 수칙

나는

❶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❷ 모든 사람이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폭언 ·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심합니다.

❸ 나와 타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공동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❹ 모든 사람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평등하고 주체적인 관계맺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❺ 나와 타인의 성정체성을 인격의 일부로 생각하며, **성에 관해 자율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❻ 고정된 성역할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나와 타인의 **인격과 신체는 존엄한 것임**을 명심합니다.

❼ 타인의 신체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중대한 폭력이며 위법행위로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❽ 음란동영상 · 잡지 · 사이트 등의 각종 매체에서 묘사되는 성적 이미지 및 메시지는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일 수 있음을 명심합니다.

❾ 성적 행위의 결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❿ 인권이나 성문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곧바로 상담을 받습니다.

1부 인권

1–1 인권의 이해
1–2 인권침해

1-1 인권의 이해

인권이란

인권(human rights)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 · 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모든 권리는 서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고 활용되는 인권선언문입니다. 총 30개 조항을 통해 시민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에 대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 제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
- 제30조 :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인권의 정의

-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1948 세계인권선언]
- **국적, 거주지, 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종교, 언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적 권리** [UN 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인권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희생과 끊임없는 투쟁 끝에 개념을 정립하고 범주를 확장시켜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사회적 · 시대적 · 역사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법률 규정

국제 규정 :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교육상 차별금지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내 법령 :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자체(학생)인권조례 등

교내 규정 :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7.11.30.)

※ 위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조치를 취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2.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폭언 · 모욕적 언사, 혐오발언, 폭력, 차별행위, 학사상 권한 남용,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포함됩니다.

인권침해의 유형

평등권 침해

-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 행위.
-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성별 등의 이유로 고용 · 임금 ·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가 포함됨.

신체의 자유 침해

-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는 경우.
-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사생활의 자유 침해

-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포함됨.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양심을 실현할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
- 개인이 종교를 가질 권리,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포함됨.
-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누릴 수 없음.

사례로 보는 인권침해 Q&A

1. 대학교 기숙사에 시각장애 1급을 가진 학생이 안내견 동반을 요청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청결 문제도 있어 난감한 상황인데 거부하면 문제가 되나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내견은 교육훈련을 받아 위험성은 크지 않으며 안내견의 대소변 등 청결 및 관리문제는 공간배치나 활동보조인의 도움, 학교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학교에서 성적소수자 관련 인권영화 상영이 "대학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1개월 전 허가받은 장소에 대하여 상영회 전날 일방적으로 대관 불허를 통보받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 관련 국제규약,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는 여성, 장애인, 노인,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가 합리적 사유없이 이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2006)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나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인종 · 피부색 · 언어 등 여타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폭력 · 괴롭힘 · 차별 · 배제 · 낙인 ·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공적, 사적 영역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대학원생인데, 학과 폐지 반대 집회에서의 발언 및 항의를 이유로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외압에 의해 논문심사도 취소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교육시설의 교육 · 훈련 상에서의 차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 남용에 의한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인권침해 Q&A

4. 임산부라 대학에 편입학 후 출산해야 하는데 휴학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만학도나 임산부, 비혼모의 경우 대학시험을 유예해야 하거나 공부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합니다. 대학이 편입학 후 즉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필요한 모성보호 관련 교칙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입학기회를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성보호에 대한 차별여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5. 대학교수 임용모집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의 영역(모집, 채용, 임금 등)인 교수 채용에 있어 차별을 당했다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여성, 장애인,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사례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5, 2016 인권상담사례집

인권침해 관련 법률 규정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국가배상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2부 성평등

2–1 성평등의 이해
2–2 성폭력

2-1. 성평등의 이해

성평등이란

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모든 사람이 지위 · 배경 등에 관계없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듯이, 젠더(사회적 성)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규범적 가치입니다. 젠더관점에 입각하여 성별 위계 및 권력관계에 따라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성별 고정 관념, 성역할, 성차별적 제도 및 관행, 이분법적 젠더 이해, 성적소수자 차별 등)을 해소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호존중과 공존의 가치와 실천을 의미합니다.

젠더의 이해

젠더(gender)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으로서, 특정하게 유형화된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 태도, 이미지, 가치 등의 특성들과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다움' '남성다움'과 같은 이분법적 성역할 혹은 고정관념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를 '젠더화된(gendered) 사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젠더관점 또는 젠더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젠더가 다른 사회요소들과 얽혀서 만들어내는 사회현상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역량, 즉 젠더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삶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젠더 문제를 읽어내고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sex)** :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에서 지정받은 신체적 성별.
- **젠더정체성(gender identity)** : 개인이 스스로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성 정체성. 지정성별(sex)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

성평등 관련 법률 규정

국제 규정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유엔 결의안

국내 법령 :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교내 규정 :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7.11.30.)

※ 위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폭력 예방조치를 취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2.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희롱 · 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성폭력의 유형

성희롱

교육 · 업무 · 고용 관계 등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손 · 가슴 ·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짐.
  - 안마나 애무를 강요.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음란한 전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질문. 개인적인 성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함.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언행을 함.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줌.
  -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함.
- **성적 봉사 강요**
  - 강제로 춤을 추도록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함.
  -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도록 요구함.
- **조건형 성희롱**
  - 성적(性的) 요구나 성희롱을 거부하면 학업성취도 · 인사고과 등에서 낮은 평가를 하는 것, 또는 성적(性的) 요구를 들어주면 좋은 평가를 주겠다고 하는 것.
- **환경형 성희롱**
  - 강의나 업무 중 음담패설, 외모평가 등 성적(性的) 발언으로 학습 ·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의욕을 저해하는 것.

성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성욕을 자극 ·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갖고 폭행 ·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행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또는 추행을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데이트 성폭력

연인 간에 행해지는 성폭력.

사이버 (온라인)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몰카'), '단톡방 성희롱', 음란물 합성('지인능욕') 등.

기타

친족 성폭력, 버스 등 공공장소 내 성폭력, 음란전화, 성기노출('바바리맨') 등.

성희롱 Q&A

1. 단순히 술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했는데, 이것이 성희롱인가요? **YES!**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모욕감을 느꼈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2. 피해자가 그 당시에는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가서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YES!**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그것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였다고 판단된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계질서나 주변 분위기로 인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술을 마시고 실수로 딱 한 번 성희롱을 했는데,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YES!**

원치 않는 행위는 반드시 여러 번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고 해도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여성에게만 차 심부름, 복사, 청소를 시키는 행위는 성희롱인가요? **NO! BUT..**

이는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행이 아니어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노동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무에 관련된 성차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YES!**

대학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고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6. 성희롱 피해를 당해도 남자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가요? **NO!**

성희롱으로 인한 법적 구제의 대상에는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7.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공동연구실, 동아리방,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았어요. 이것은 성희롱인가요? **YES!**

공적 장소라면 언제든지 타인이 그 장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8. 교수가 수업 중 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성희롱인가요? **YES!**

교수가 특정하게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연한 성적 언행으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는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9. MT나 동아리 모임 등에서 하는 선정적인 게임은 성희롱인가요? **YES!**

MT나 동아리 모임, 회식 등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게임을 하거나 불쾌하게 느낄 만한 선정적인 놀이를 진행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10. 행사 때 야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희롱인가요? **YES!**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거나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같이 출 것을 강요하는 것, 또는 행사 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도록 요구하는 것 등은 상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로서 분명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Q&A

1.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상대가 강요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도 성폭력인가요? **YES!**

   그것을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친밀한 사이에서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강요에 의해 성적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2. 제가 술을 많이 마신 날 필름이 끊겼는데, 남자친구가 억지로 자기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면 그것을 성폭력인가요? **YES!**

   상대가 남자친구이더라도, 자신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고 성관계를 하자고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일방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런 행동은 성폭력입니다.

3. 사귀다 헤어진 후 만나기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고,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를 해요. 이 정도면 개인적인 문제니까 신고해도 처벌은 어렵겠지요? **NO!**

   의도적, 악의적,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이러한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되는 스토킹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감정, 가해자의 고의성, 가해 행위의 반복성이 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됩니다.

4. 남자는 강제로 추행이나 강간을 당해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없나요? **NO!**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또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도,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가능합니다.

5. 제가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 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NO!**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성폭력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가 취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6. 채팅을 하는 중에 상대가 갑자기 저에게 성적인 제안을 하면서 음란한 영상을 보냈어요.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YES!**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성폭력 역시 성적자기결정권과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7.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우연인 듯 제 허벅지를 만졌어요. 이것도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YES!**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타인에게 몸을 고의로 밀착시키거나 만져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공공장소 내 성폭력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성추행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8.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데 정말인가요? **YES!**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전체의 70% 정도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9. 여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YES!**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10. 숙박업소나 자취방 등에 따라 들어갔고,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 아닐까요? **NO!**

    당사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추정된다면 저항이 없었어도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 성폭력 주요 유형별 처리 사례

● MT 중 발생한 집단 성추행

OO대학교 MT 중 여학생 A씨가 만취해 잠든 사이에 남학생 세 명이 여학생 A씨를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 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처리결과 :** 재판 결과 가해 남학생들에게는 3년간 신상공개 명령과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이 소속한 학교는 가해자 세 명에 대하여 출교처분을 내렸다.

사건 진행 중 가해자의 어머니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파적인 여론을 조성(2차가해)한 혐의로 고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 뒤풀이 후 잠든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

OO대학교 농활 기간 중, 남자 후배가 뒤풀이 후 잠든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일이 발생했다. 여학생이 기척을 하자 남학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에서 나갔다.

···›**처리결과 :**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는 공식처리가 아닌 중재를 요청하였다.

이에 학교 측은 사과문과 각서 제출, 재발방지 대책마련(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졸업 시까지 시간표와 학교 내 동선 제한)과 징계보류(유사 사건 재발시 중징계 처분 수용, 3개월간 근신)를 전제로 한 중재처리를 하였다.

● MT에서 진행한 선정적인 게임

OO대학교 MT에서 게임을 진행하면서 남녀 후배들에게 '키스하기', '술을 입으로 전달하기', '여학생 눕혀놓고 남학생이 팔굽혀펴기 하기'와 같은 벌칙을 강요했다. 이런 게임을 해야만 했던 신입생들은 MT 후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

···›**처리결과 :** 사건 조사 후 가해 학생들에게는 40시간 성희롱 가해자교육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가담 정도에 따라 한 학기에서 두학기까지의 강제휴학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자필 사과문 작성과 전달,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졌다.

●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

OO대학교는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보관한 혐의로 재학생 A씨를 학교 명의로 고소했다.

···›**처리결과 :**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해당 대학교도 이 사건에 대한 교내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A씨는 퇴학 처분을 받았다.

● 수업태도를 지적하던 중의 언어적 성희롱

OO대학교의 A교수는 수업 중 B학생이 딴 짓을 하자 "나중에 술집 가서 술 따르는 일 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술만 따르는 게 아니라 2차도 나간다던데."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B학생은 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 이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처리결과 :**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측 주장 및 당시 수업 출석 학생들의 진술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2차 나간다는 말은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가해자에게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캠퍼스 내 성폭력 주요 유형별 처리 사례

● 회식 후의 성추행

OO대학교 A교수는 2014년 7월 모 위원회 회식 후 자신을 도왔던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인턴 여학생과 제자 등 9명을 대상으로 몸을 더듬거나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OOO 교수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진술했다.

···› **처리결과 :** 재판부는 대학교수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인간적 신뢰감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해당 대학 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OOO 교수를 파면했다. 해당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신청한 상태이다.

성폭력 관련 법률 규정

국내 법령 : 대한민국헌법, 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교내 규정 :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7.11.30.)

3부 인권침해, 성폭력의 대처

3–1 인권침해의 대처
3–2 성폭력의 대처

3.1. 인권침해의 대처

인권침해의 대처

1.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 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 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거부의사와 함께, 상대의 침해 행위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3.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 사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4.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결정합니다.
   -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3.2. 성폭력의 대처

성희롱 피해 대처

1. 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거부의사와 함께, 상대의 언행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2.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 피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3.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335-1858)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성폭행(강제추행, 강간 등) 피해 대처

1.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심신의 안정을 회복합니다.

2.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 강간,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폭행 등 위중한 피해상황이라면 응급구호(119), 범죄신고(112)로 의료지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 성폭력 증거채취가 필요하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해바라기센터(예: 서울해바라기센터 02-3672-0365)로 연락합니다.
   -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면 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335-1858)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지인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 도움을 줄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받습니다.
   - 필요시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4. 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둡니다.
   - 당시 입었던 옷 등 증거물을 모아 보관합니다.
   -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인상 및 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5.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 조치들이 완료되면 보호자(가족이나 친구)를 동반하여 귀가합니다.
   -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논합니다.
   -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6. 사건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캠퍼스 내 성폭력 주요 사례별 대처

친구나 동료 관계에서

1. **사례 : MT 등으로 외박을 하는 경우, 만취하여 빈 방에서 잠들었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알아차렸을 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혹은 무서워서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사례 : 술자리 등 모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과도한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마음 속으로 싫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나친 요구나 압력을 받는다면 불편하다고 알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례 : 듣기 거북한 과도한 성적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처 :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불편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불편한 표정을 지어서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립시다. 나중에라도 그런 농담이 불편했다는 것을 전달해야 그런 언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사례 : 단체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의 성경험에 대해 소문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이런 언행은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누군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형사처벌되는 행위임을 알려주고 그런 언행을 그만두도록 조언합시다.

캠퍼스 내 성폭력 주요 사례별 대처

선배나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1. 사례 : **프로그램 작동방법을 알려준다면서 과도하게 밀착하거나, 대화 중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갑작스러운 밀착에 당황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승낙이라고 여기고 그런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너무 가까이 밀착하는 건 좀 불편하네요." 하고 정중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례 : **학회발표 등으로 숙박을 하는 상황에서 밤 늦게 방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밤늦은 시간에 폐쇄된 공간에 둘만이 있는 것은 문제발생 소지를 증가시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내일 오전에 의논했으면 합니다."하고 단호하게 말하도록 합니다. 만약 반복해서 계속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 상황이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방으로 찾아올 것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럴수록 절대로 그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3. 사례 : **성적이나 장학금 수여, 추천서 작성, 취업자리 등을 제안하면서 사적인 만남과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상대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거절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추행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용기를 내어 단호하고 정중하게 거절합시다.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경우 나의 반응을 마음대로 긍정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4. 사례 : **내가 잘 알던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일 때, 그 사람을 두둔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성폭력 가해자 중에는 평판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평소 행실이나 태도에 비추어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가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차가해는 그 자체가 처벌사유가 됩니다.

주변에서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1.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 '너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믿어. 옆에서 도와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2.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왜 저항하지 않았니?" "그런 데를 왜 따라갔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 행동을 판단하는 질문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네 탓이 아니야."라고 이야기 해 줍니다.

3. 침착하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합니다.

- 피해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 (강간 등의 피해라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해바라기센터(예:서울 해바라기센터 02-3672-0365) 또는 산부인과에 가도록 설득하고, 가능하다면 동행합니다.
-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었던 옷이나 증거물을 모아 보관합니다.

4. 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335-1858) 등 관련기관을 안내합니다.

-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되, 피해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합니다.
-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피해자와 먼저 의논하여 그 의견을 묻습니다.

5.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 소문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뒷말, 비난 등은 2차가해가 되어 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소문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인권침해 및 성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때

1.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사과합니다.

-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여, 곧장 문제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합니다.

3. 거짓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가해행위의 부인과 왜곡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진심어린 사과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피해자도, 가해자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더욱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됩니다.

4. 피해자를 빨리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문제가 된 행위와 무관한 사실까지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5. 조사에 임할 때는 진정으로 사과하며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6.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사건처리 과정이나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 비난, 협박, 회유, 과도한 합의 종용 등은 2차가해가 되어 가중처벌되거나 그 자체로 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부 인권센터

4–1 인권센터가 하는 일
4–2 사건처리 절차
4–3 사건처리 및 지원체계
4–4 인권센터 이용 및 상담신청 안내

4.1. 인권센터가 하는 일

인권센터는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 문제를 ①상담 · 조사 · 조정 · 중재 · 심의하는 **사건처리**와 ②인권 친화적 대학 문화의 확산 및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 연구** 활동을 합니다.

1. 사건처리

인권센터 신고 · 상담 대상 사건유형

Ⅰ. 성희롱 · 성폭력	Ⅱ. 인권침해
1. 언어적 · 시각적 성희롱 2. (준)강간 등 3. 성추행(신체적성희롱) 4. 기타	1. 인격권 침해 – 폭언, 모욕적 언사 – 혐오적 발언 – 명예훼손 – 기타 2. 학습 · 연구권 침해 – 부당한 업무 지시 – 학사상 권한 남용 3. 기타

2. 인권교육 및 연구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 · 성평등 의식 및 인권 · 젠더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인권침해 · 차별 · 폭력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학내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합니다.

- 인권교육(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성평등 교육(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 교육 자료 제작 · 배포
- 인권 관련 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4.2. 사건처리 절차

① 사건의 신고 · 상담 신청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센터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② 사건의 조사

- 인권센터는 피해를 주장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 신청인/신고인의 진술을 먼저 들은 후, 피해내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진행 방향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③ 중재 또는 조정에 의한 사건의 처리

- 당사자의 의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권센터와 연계한 중재와 조정을 통해 징계 · 사법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④ 인권심의위원회 회부

-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종국적으로 **해당 단과대학 또는 관계부서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인권센터 사건처리 절차 및 피해구제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실 경우에는 본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사건처리 및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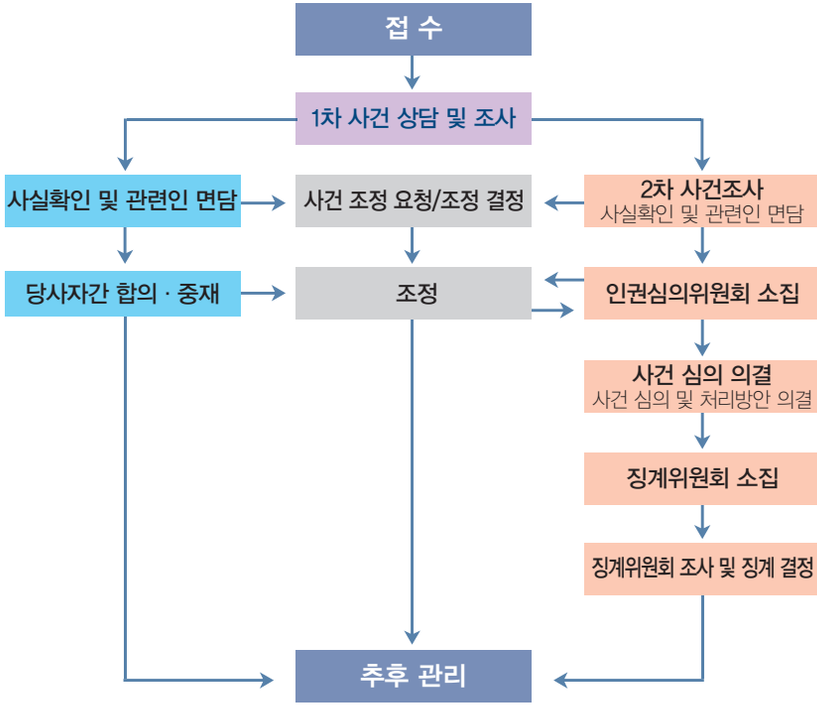

4.4. 인권센터 이용 및 상담신청 안내

- **상담영역 :** 인권침해 사건,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성고충 상담
- **상담신청 :** 예약 후 인권센터 방문 (학생회관 3층)
- **예약방법 :** http://hrc.hanyang.ac.kr
- **문　　의 :** ☎ (02) 2220–1444　✉ hyrights@hanyang.ac.kr

※ 상담내용과 상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입니다.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성폭력 사건 비상상황 대처 방법

교내지원

기본연락처	인권센터(02–2220–1444)
인력지원 필요시 (피해자 보호/가해자 신병확보)	관재팀(02–2220–0137~8)
야간문제 발생시	통합보안상황실(02–2220–2117~9)
대외적 문제 발생시 (언론사 취재 요청 등)	미디어전략센터(02–2220–0039)
응급조치 필요시	한양보건센터(02–2220–1466)
상담지원 필요시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02–2220–1498)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무료법률상담** (학기중)
- 홈페이지 : legalclinic.hanyang.ac.kr
- 이 메 일 : hylaw@hanyang.ac.kr
- 전　　화 : 02–2220–1009
- 방　　문 : 서울캠퍼스 제1법학관 201호

교외 성폭력 피해 지원시설

서울 해바라기 여성 · 아동센터 (서울대병원 내)	02–3672–0365(24시간, 증거채취 가능)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송파구 경찰병원 내)	02–3400–1700(24시간, 증거채취 가능)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02–2263–6465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여성긴급전화	1366

※ 참고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2015, 2016년 인권상담사례집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 쉐도우 핀즈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적 대응 안내서'